

“불법 유동광고물 신고방법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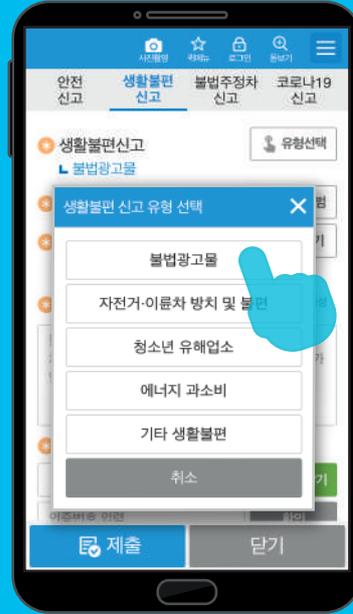


앱 스토어(App Store)에서
『안전신문고(구 생활불편신고)』 설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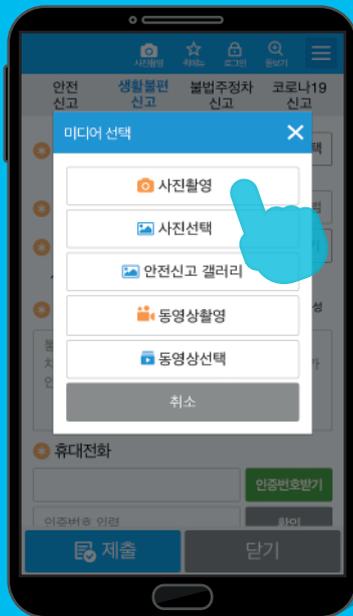
안전신문고
앱(App) 접속

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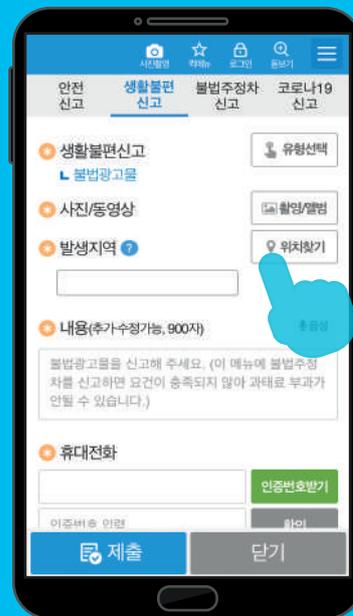
생활불편신고
불법광고물 선택

2



불법광고물 사진
혹은 동영상 첨부

3



내용입력 및
위치정보 전송
(신고하는 위치 자동 등록)

4

『불법광고물 조치결과 확인』

- ▶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후 SMS(단문자) 발송
- ▶ 안전신문고앱에서 처리내용 확인 가능

불법 옥외광고물에는 무엇이 있나요?

현수막·입간판·벽보·전단에서 빈번하게 불법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.

불법 분양 현수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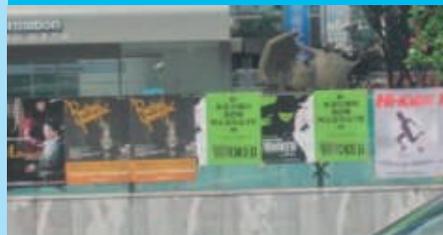


아파트 분양광고, 지역주택조합 분양광고 등이 도로변, 사거리, 나무 등에 게시되어 있는 "불법 현수막"

불법 입간판



불법 벽보



불법 전단



다른 업소 광고를 표시하거나 전기·조명을 사용한 입간판, 높이(1.2m)·면적(1.2㎡) 등 규격을 위반한 "불법 입간판"

지정 게시판이나 지정 벽보판에 부착하지 않은 "불법 벽보"

신고하지 않고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시설물 등에 끼워 넣은 "불법 전단"

“지정게시대 이용 옥외광고물만 합법”